

2026년 상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0일

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

1. 선발예정인원,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

가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: 25명

직렬 (직류)	구분	직급	선발예정 인원(명)	담당업무	비고
행정 (일반행정)	일 반	9급	11	기획, 총무, 회계 등 일반행정 및 시설 행정 업무	
	보 훈	9급	2		
기술 (건축)	일 반	9급	1	공공건축 업무 및 시설관리 등	
기술 (토목)	일 반	9급	1	도시개발, 도시계획 업무 및 시설관리 등	
	보 훈	9급	1		
기술 (기계)	일 반	9급	2	시설관리 및 기계안전관리 업무 등	
	장 애	9급	1		
	보 훈	9급	1		
기술 (전기)	일 반	9급	1	시설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등	
	장 애	9급	1		
기술 (조경)	일 반	9급	1	조경공사, 공원조성업무 및 시설관리 등	
기술 (지적)	일 반	9급	1	지적측량, 손실보상, 시설관리 등	
기술 (환경)	일 반	9급	1	시설 대기환경 관리, 보건안전관리자 업무, 시설관리 등	

※ 채용분야·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

나.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

직렬 (직류)	구분	직급	선발예정 인원(명)	필기시험 과목(문항수)
행정 (일반행정)	일반	9급	1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행정학(20) ④경영학(20)
	보훈	9급	2	
기술 (건축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건축법규(20) ④건축구조(20)
기술 (토목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토목시공(20) ④도시계획(20)
	보훈	9급	1	
기술 (기계)	일반	9급	2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기계일반(20) ④기계설계(20)
	장애	9급	1	
	보훈	9급	1	
기술 (전기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전기이론(20) ④전기기기(20)
	장애	9급	1	
기술 (조경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조경학(20) ④조경계획및설계(20)
기술 (지적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지적측량(20) ④지적전산학개론(20)
기술 (환경)	일반	9급	1	①일반상식(20) ②한국사(20) ③환경공학(20) ④화학개론(20)

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

- ① 필기시험 과목 중 ‘일반상식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일반상식 : 국어 50%, 시사경제문화 50%
- ② 영어시험과목은 공고문 ‘1-다. 영어시험과목 대체’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.

다. 영어시험과목 대체(전직렬 공통)

○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(응시자격에 해당)

-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의 종류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IBT 71점 이상	
토익(TOEIC)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(TEPS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Level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※ 위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를 만족하는 시험성적을 정상적으로 사전등록해야 필기시험 등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유효기간(2년)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,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(단,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<https://gongmuwon.gosi.kr/>)에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)(미등록자 불인정)
-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및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

※ 영어능력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①'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 이거나 ②'양쪽 귀 청력 손실 60dB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 50% 이하'(진단서 제출)인 사람에 해당합니다.
- 제출서류 : 의사진단서(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발급한 진단서, 의사소견서는 불인정)
 - * 진단서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
 - *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: 면제대상 판단기준 검사방법,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,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- 다음 예시표 참조

<전문의 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-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- 신청방법 :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,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(등기)으로 제출
(우 61964) 광주 서구 시청로 26 광주도시공사 총무팀 채용담당

- *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「별표 1」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- *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시험에 한하며, 최초 1회 제출하면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기하되, 진단서는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○ 시험성적 사전등록 안내

-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(토플, 토익, 텡스, 지텔프, 플렉스)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,
-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<https://gongmuwon.gosi.kr/>)에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며, 사전등록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시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*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, 사전등록 후 원서접수 화면에서 사전등록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 미제출로 간주
- 등록대상시험 : 토플(TOEFL), 토익(TOEIC), 텡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
-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<https://gongmuwon.gosi.kr/>)에 사전등록된 유효한 영어 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, 인사혁신처 연계신청을 통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2

시험 방법

가. 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 100점 만점, 4지 택 1형 20문항)

나. 제2차 시험 : 서류전형

다. 제3차 시험 : 인·적성검사

라. 제4차 시험 : 면접시험

※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,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,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

3

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

가. 필기시험시간: 10:00 ~ 11:20(80분)

나. 시험과목 : 총 4과목

다. 제1차(필기)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

○ 합격자 결정방법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
○ 합격인원 :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

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직 렬 (직류)	구 분	직급	필기 합격 인원
행 정 (일반행정)	일 반	9급	33
	보 훈	9급	6
기 술 (건 축)	일 반	9급	3
기 술 (토 목)	일 반	9급	3
	보 훈	9급	3
기 술 (기 계)	일 반	9급	6
	장 애	9급	3
	보 훈	9급	3
기 술 (전 기)	일 반	9급	3
	장 애	9급	3
기 술 (조 경)	일 반	9급	3
기 술 (지 적)	일 반	9급	3
기 술 (환 경)	일 반	9급	3

가. 응시 결격사유 등(기준일 :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)

- 「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제14조(결격사유), 제29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

○ 「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제14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2. 삭 제 <2025. 3. 4.>

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○ 「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제29조(정년)

1.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
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거 주 지 : 제한 없음

다. 성 별 : 제한 없음

라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마. 자격요건

- (행정)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

- (기술)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으나, 아래 인증 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

※ 자격·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.

구분	자 격 증 종 류	
토목 · 지적	산업기사	토목산업기사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, 콘크리트산업기사, 지적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
	기 사	토목기사, 건설재료시험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 콘크리트기사, 지적기사, 도시계획기사, 건설안전기사
	기 술 사	토목구조기술사, 토질및기초기술사, 도로및공항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, 토목품질시험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, 지적기술사, 도시계획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
건축	산업기사	건축산업기사, 실내건축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
	기 사	건축기사, 실내건축기사, 건설안전기사
	기 술 사	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건축품질시험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건축사
기계	산업기사	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, 가스산업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분야), 에너지관리산업기사
	기 사	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건축설비기사, 가스기사, 소방설비기사(기계분야), 에너지관리기사
	기 술 사	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가스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소방기술사
전기	산업기사	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분야)
	기 사	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소방설비기사(전기분야)
	기 술 사	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, 소방기술사, 발송배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
조경	산업기사	조경산업기사,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
	기 사	조경기사, 자연생태복원기사, 골프코스관리사(발급기관 : (사)한국골프장경영협회, 골프코스 관리사 2급이상(발급기관 : (사)한국아시아프로골프협회)
	기 술 사	조경기술사, 자연환경관리기술사
환경	산업기사	대기환경산업기사, 소음진동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
	기 사	대기환경기사, 소음진동기사, 수질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토양환경기사, 자연생태복원기사
	기 술 사	대기관리기술사, 소음진동기술사, 수질관리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, 토양환경기술사, 자연환경관리기술사

바. 제한경쟁을 통한 구분모집(장애 및 보훈)

- (장애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(보훈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<보훈(취업지원) 대상자 범위>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- 보훈 및 장애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등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(장애: 장애인증명서, 보훈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)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해야하고, 필기전형 후 서류전형 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훈 및 장애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※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『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【통합채용 공고문】』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

사. 병역사항(남자에 한함)

-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* 군복무자(현역, 대체복무)의 경우 단계별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, 전역 예정일이 임용 예정일 전인 경우 지원 가능함.

구분	전형일정	방법
채용공고	2026.4.10.(금)	▶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(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) 공고 ▶ 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
원서접수	2026.04.24.(금) 10:00 ~04.30.(목) 17:00까지	▶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
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	2026.05.22.(금)	▶ 광주광역시,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공고(응시표 출력 : 10:00 ~)
필기시험	2026.05.30.(토)	▶ 필기시험 고사장(공고된 고사장)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	2026.6.15.(월)	▶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
서류전형 접수	2026. 6. 16.(화) ~ 6. 23.(화)	▶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(필기시험 합격자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6. 26.(금)	▶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
결격사유 조회	2026. 6. 26.(금) ~ 2026. 7. 3.(금)	
인적성검사	2026. 7. 1.(수)	▶ 인적성검사 고사장(공고된 고사장)
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	2026. 7. 3.(금)	▶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
면접시험	2026. 7. 8.(수)	▶ 인적성검사 합격자 대상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7. 13.(월)	▶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
임용등록	2026. 7. 13.(월) ~ 2026. 7. 17.(금)	▶ 공사 방문
임용 예정일	2026. 8. 1.(토)	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,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gwangju.go.kr>) 「시험인사정보」 및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
- ※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,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(전화 확인은 불가함)

가. 접수방법

-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.

나. 접수시간

-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10:00 ~ 종료일 17:00(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)

다. 사진등록

-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.5cm×4.5cm(해상도는 100dpi 이상),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(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, 배경사진, 측면사진 등은 불가)
-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, 응시직렬(직류/구분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격 제한,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, 누락·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
7

제2차(서류전형) 시험

가. 제출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
나. 제출기간 : 2026. 6. 16.(화) ~ 6. 23.(화)

다. 제출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※ 제출장소: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,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층 총무팀

라. 제출서류

구분	내용	비고
신분증 사본	▶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한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 사본	공통
자격증	▶ 해당분야 국가(기술)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	해당자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보훈)	▶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	해당자
장애인증명서 (장애)	▶ 공고일 이후 시·군·구 등에서 교부한 증명서	해당자
가산점 관련 증명서류	▶ 다문화가정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,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	해당자

8

제3차(인적성검사) 시험

가. 대 상 : 제2차(서류전형) 시험 합격자

나. 시험일자 : 2026. 7. 1.(수)

다. 제3차(인적성검사)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

- 합격자 결정방법 : 인성검사 적합자 중 적성검사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- 합격인원 :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

9**제4차(면접전형) 시험**

가. 대 상 : 인적성검사 시험 합격자

나. 면접일자 : 2026. 7. 8.(수)

다. ‘공정’하고 ‘투명’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으로 진행됨

○ 면접일시, 면접방법 등 세부내용은 면접전형 실시 전 공고 예정입니다.

라. 최종합격자 결정방법

○ 각 전형 단계별 점수에 가중치 부여를 통해 종합평가(필기시험(50%), 면접전형(30%), 적성검사(20%))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※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③ 면접전형 ④ 적성검사의 각 전형 단계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함

10**합격자 결정 및 발표**

가. 일 자 : 2026. 7. 13.(월)

나. 근 무 지 : 입사 후 본사 및 현업 사업소 등 근무

※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응시 지원자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부서 배치가 될 수 있음

다. 시보 임용 기간의 운영과 정규 임용 제한

○ 관련 근거 :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

○ 주요내용

– 최종합격자의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,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규 임용을 제한하고 해임할 수 있음

라. 합격 취소 등 유의사항

○ 단계별 전형으로서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 합격된 자라 할지라도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임용 결격사유 조회,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채용 관련 청탁자,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「청탁금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, 향후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시에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.

–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를 시행하거나, 금잔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 이후 적발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가.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

구 분	내 용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
자 격 (면 허) 소지자	1. 행정분야 :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변리사 2. 기술분야 : 기술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·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
사회적 약자	1. 장애인 2. 북한이탈주민 3. 다문화가정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· 장애인 - 「장애인 고용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· 북한이탈주민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· 다문화가족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나목의 다문화가족 구성원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점 부여		
지역인재	최종학력이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(대학원)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-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%		
외부제안 공모	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점 부여 (공사에서 실시한 외부제안공모에서 1등상을 수상한자)		

나. 취업지원대상자(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을 가산합니다.
-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(직류/구분)별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
- ※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
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, 직군(직렬)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- 자격증 가산점은 ‘직군(직렬)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’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.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에 자격증(가산점)의 종류 및 자격(보호)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(필기시험 답안지에는 ‘가산점 표기란’이 없음)
- ※ 자격증(가산점) 종류, 자격번호,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12

예비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기준
 -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최종 성적순으로 직급·직류별 예비합격자를 선정합니다.
- 예비합격자 선정 인원: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
- 임용조건 : 최종 합격 취소 요건 발생, 최종합격자의 미등록, 최종합격자가 임용일로부터 ‘예비합격자 운영기간’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.
-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운영

- 가.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),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나. 본 채용은 블라인드 평가방식의 채용으로 응시 지원서 접수,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불합리한 차별(응시자격 관련 항목 제외)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.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라.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마.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『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』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바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응시지원서 허위 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부정행위, 채용비위 발생 등에 대하여는 공사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당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채용비위 발생 시에는 우리 공사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의 규정에 따라 「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」을 참조하여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

- 차. 최종합격예정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나,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카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u.go.kr>)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(<https://gwangju.ai-recruit.kr/>)에 공고합니다.
- 파. 서류전형 시 채용관련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'채용서류 반환청구서'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 (전자우편 insa@gmcc.co.kr)할 수 있습니다. 반환은 채용기관에서 '채용서류 반환 청구서'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 및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고, 등기우편은 수신자 부담입니다.
- 하.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 ☎ 062-600-6643)